

# 통영해양경찰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

통영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 - 07호

해양경찰청 공고 제2023-52호('23. 4. 20.)에 따라 실시한 해양경찰청 청년 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  
통영해양경찰서장

## 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(원서접수기관, 응시번호 순)

응시관서	지원분야	선발인원	응시번호(합격자)				
통영해양경찰서	행정	2명	9035001 (김*섭)	9035002 (임*채)	9035003 (박*아)	-	-

## 2.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- 서류전형 합격자는 **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서식1)** 및 **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(서식 2)**를 작성하여(서명 및 pdf화)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, 응시원서 접수 시 이미 제출한 제출자는 해당없음
  - 파일명 : 응시분야\_성명(응시번호).pdf
- 응시자 제출서류는 **각 응시관서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**하고,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  -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
- 제출 기간 : **5. 10.(수) ~ 5. 14.(일)**
- 응시관서별 담당자 e-mail 주소 및 문의 연락처

소속기관	일반전화	이메일 (채용 원서접수 시 활용)
통영해양경찰서	(055)647-2216	luvov@korea.kr

※ **반드시 응시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**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'**성명(지원코드)**'로 기재

### 3.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

- 면접시험 일정
  - ※ **면접일자 및 입장시간을 확인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면접집행 방식 사전 설명 등을 위해 입장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면접방식 : 개별 또는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

응시관서	응시분야	면접 일자	입장시간	면접 (대기) 장소
통영해양경찰서	행정	23.5.17.(수)	10:00	■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2로 45, 통영해양경찰서 7층 소회의실

- ※ **응시분야별 면접일시와 장소가 다르니** 응시자는 반드시 **본인이 응시한 응시분야의 면접일시와 장소를 확인**하기 바람
- ※ **면접 당일 입장시간 및 대기장소** 등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**이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**

### 4. 응시자 안내사항

-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하며 **미지참자는 응시가 불가**합니다.
- 면접대상자는 **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장(응시자대시실)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**됩니다.
- **응시분야 및 응시번호를 숙지**하시고, 면접시험 준비에 필요한 **필기구를 지참**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기간 중에는 **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**되며, 시험 종료 후에는 대기 중인 응시자와도 **접촉할 수 없습니다**.
- 면접시험 대기 중에는 **통신장비(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PC 등)**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이를 위한반 경우에는 **부정행위자로 간주** 될 수 있습니다.
  - ※ 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PC 등 통신장비 일괄 수거 예정(사용불가)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**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최종 합격자 발표

-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, 나라일터에 공고하고,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.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: '23. 5. 26.(금) 예정  
※ 서류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,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##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응시번호	응시분야	응시관서	생년월일	성명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.

2023. . . .

성명 : (서명)

해양경찰청장 귀하

## 서식 2

##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\* 미제출자 보완서류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###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####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 ] 예 [ 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#### 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